

2019.11.20.~12.19./30일간

제312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 회 결 과



장 성 군 의 회

심사결과

의안명	심사결과
장성군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원안가결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원안가결
2020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계획안	원안가결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가결
장성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원안가결
동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승인안	원안가결
2020년도 예산안	수정가결
2020년도 장성군 기금운용계획안	원안가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주요 내용

1. 장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 발의일자 : 2019. 11. 19.
- 발 의 자 : 오원석 의원, 임동섭 의원
- 제안이유
 - 장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및 위원회 등의 연구 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 연구활동비 지원 및 이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의원 정책연구의 실효성과 내실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제1조 ~ 제2조)
 - 연구단체의 구성 및 등록, 활동범위, 등록취소 (제3조 ~ 제6조)
 - 연구활동비의 지원, 신청, 집행 및 관리, 결과보고서(제7조 ~ 제10조)
 - 심의위원회 설치, 기능, 회의 등 (제11조 ~ 제14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 장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 제출일자 : 2019. 11. 14.
- 제 안 자 : 장성군수(총무과)
-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제30018호, 2019.8.6., 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공직자의 적극행정을 지원하여 적극행정 추진 분위기를 확산하고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예방·근절하여 군민에게 봉사하고 현장과 소통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등 규정

○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2조)

-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시행,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 의견수렴

○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안 제3조)

-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인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의결결과 : 원안가결

3.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일자 : 2019. 11. 14.

■ 발 의 자 : 장성군수(주민복지과장)

■ 제안이유

- 조성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당해연도 운용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과 운용수입액의 10퍼센트 이상 적립하는 규정을 제11조제1항에 의거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 할 수 있도록 개정
- 법적 지원 근거가 없는 노인활용시설의 운영비 및 시설 개보수비 지원과 기초생활 수급자 생업자금 융자 등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 연장

■ 주요내용

○ 사회복지기금 사용범위 확대(안 제5조)

- (현행) “기금은 조성목적에 따라 당해 연도 운용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용수입액(이자수입포함)의 10퍼센트 이상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

- (개정) “기금은 제11조제1항에 의거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5조의2)

- (현행)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한다.”
- (개정)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한다.”

- 의결결과 : 원안가결

4.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일자 : 2019. 11. 14.

- 발 의 자 : 장성군수(문화관광과)

- 제안이유

- 2019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장성군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군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하고 체육활동을 권장 및 육성하기 위하여 5년간 연장코자 함.
- 조직명 변경으로 인한 조례 내 명칭 불일치 등 직제개편으로 인한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그에 따른 행정 비효율을 최소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안 제7조(기금의 존속기한)]
 - (현행) 2019년 12월 31일
 - (개정) 2024년 12월 31일
- 기금운용관 변경 [안 제12조(회계공무원) 제1항 제1호]
 - (현행) 문화관광과장
 - (개정) 체육업무담당과장
- 기금출납원 변경 [안 제12조(회계공무원) 제1항 제2호]
 - (현행) 체육지원담당
 - (개정) 체육업무담당

- 의결결과 : 원안가결

5. 장성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일자 : 2019. 11. 14.
- 발 의 자 : 장성군수(문화관광과)
- 제안이유
 - 「장성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군민회관 사용료 기준에서 군민회관 사무실 연간 사용료가 1㎡당 32,000원으로 타 군에 비해 과다하여 개정하고자 함.
 -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장성군민회관 사무실 연간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군민회관 사무실 사용료 기준 변경(안 별표)
 - 당초 : 사무실(1㎡당) 기준사용료 32,000원
 - 변경 : 사무실(1㎡당) 기준사용료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준용
- 의결결과 : 원안가결

6.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 발의일자 : 2019. 11. 14.
- 발 의 자 : 장성군수(기획감사담당관)
-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 권고 사항을 규약에 반영하여 행정협의회 경비 관리 투명성 제고 및 효율적인 행정협의회를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협의회 경비 부담에 관한 조항의 구체적 명시
 - 행정협의회 부담금의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신설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 집행에 관한 사항 신설
- 의결결과 : 원안가결

7.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 발의일자 : 2019. 11. 14.
- 발 의 자 : 장성군수(기획감사담당관)
-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 권고 사항을 규약에 반영하여 행정협의회 경비 관리 투명성 제고 및 효율적인 행정협의회를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의장의 임기 : 1년 → 2년 변경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고문으로 위촉 할 수 있는 조항 신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협의회 경비 부담에 관한 조항의 구체적 명시
 - 공동부담금의 납부 및 경비 지출사항에 관한 사항 명시
 - 예산 및 결산 내역 보고에 관한 사항 신설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 집행에 관한 사항 신설
- 의결결과 : 원안가결

8. 2020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계획안

- 발의일자 : 2019. 11. 14.
- 발 의 자 : 장성군수(기획감사담당관)
- 제안이유
 - 2020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장성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
- 주요내용

부서명	출연기관	2020년 출연금	사업내용	관련법령
합 계	3개 기관	2,735,752		
재 무 과	한국지방세 연구원	3,802	지방세 연구 조사 등을 위한 지방 세 발전 기금 적립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동법 시행령 제94조
일자리경제과	(재)전남생물산업진 흥원(나노바이오 연구센터)	100,000	나노산업 발전 및 지역 내 생산품을 활 용한 산업 기반조성 등	전라남도 생물산업 육성 조례 제10조
평생교육센터	(재)장성장학회	2,624,950	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 지원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7,000	인재육성 및 기부문화 선도 (교육책자 판매대금)	

- 의결결과 : 원안가결

9.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발의일자 : 2019. 11. 14.
- 발 의 자 : 장성군수(기획감사담당관)
-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다목적 복지회관 신축
다양해진 가족유형에 필요한 맞춤형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및 기존의 분산된 복지시설들을 집약함으로써 이용자의 접근성 증대로 시너지 효과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 자연생태 체험장 조성
사계절 즐길 수 있는 정원(장미, 초화, 목본, 그라스) 및 동물 체험관 등 복합 자연생태 체험장을 조성하여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의결결과 : 수정가결 (다목적 복지회관 신축 1건 가결)

10. 장성군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발의일자 : 2019. 11. 19.
- 발 의 자 : 심민섭 의원, 이태신 의원
-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33조에 따라 장성군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한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 적용범위 (안 제3조)

- 군수의 책무 (안 제4조)
-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안 제5조)
- 산불방지 사업 참여자 모집 등(안 제6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1. 장성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일자 : 2019. 11. 14.

■ 발 의 자 : 장성군수(일자리경제과)

■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필수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 영세상인들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수의 사용계약 기간 확대(안 4조의 3항)
 - 사용허가 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사용·수익허가 갱신
- 입찰 대부계약의 기간 및 갱신회수 신설(안 4조의 2)
 - 갱신회수 1회, 갱신기간 5년 이내로 사용·수익허가
- 행정처분에 대한 당사자 권익 보호를 위한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른 청문 등 의견진술 기회 부여(안 8조의 2)
 - 시장의 인정 취소
 -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취소
 - 시장정비사업의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2. 장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일자 : 2019. 11. 14.
- 발 의 자 : 장성군수(맑은물관리사업소)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간 납부기한을 동일하게 개선할 것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 개혁추진단의 권고에 따라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을 개선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안 제6조제4항)
 - (현행)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이 고지일부터 15일 이내,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 최대 24개월까지 분할납부
 - (개선)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이 고지일부터 30일 이내,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 최대 24개월까지 4회에 한정하여 분할납부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3.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 발의일자 : 2019. 11. 14.
- 발 의 자 : 장성군수(안전건설과)
- 제안이유
 - 황룡강 호안정비, 저류지 조성등을 통해 하천의 치수 및 환경기능을 강화하고, 식생복원, 수질정화습지 조성 등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2017년 국토부로부터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어 2019년부터 연차적으로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총 사업비 : 20,500백만원(재원 - 국비 50% + 도비 15% + 군비 35%)
 - 계속사업비 : 20,500백만원(국비 102.5억, 도비 30.75, 군비 71.75억)

기 간	사업비 (백만원)	내 용
계	20,500	
2019년	1,200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추진
2020년	4,000	•하천 정비사업(호안 및 보 정비)
2021년	7,000	•하천 정비사업(호안 및 보, 정화습지 조성)
2022년	7,000	•하천 정비사업(자전거도로 및 생태광장 조성)
2023년	1,300	•하천 정비사업(생태광장 등 조성)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4.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 발의일자 : 2019. 11. 14.

■ 발 의 자 : 장성군수(안전건설과)

■ 제안이유

- 동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농촌마을의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인구 유지 및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어 2016년부터 연차적으로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을 받아 2019년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동화면 문화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운영위원회 미구성과 잔여사업(보도정비, 주차장 확보 등) 주민 의견 수렴 지연으로 2021년까지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계속사업비 : 4,300백만원(국비 3,010, 군비 1,290) ⇒ 변경없음
- 계속비기간 - 당초 : 2016 ~ 2019(4년)
- 변경 : 2016 ~ 2021(6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5. 2020년도 예산안

▪ 제출일자 : 2019. 11. 18.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주요내용

○ 세 입 : 416,000,000천원

가. 삭 감 : 해당없음

나. 증 액 : 해당없음

다. 회계별 수정내역

(단위:천원)

회 계 별	예산요구액	심 사 결 과			
		세 입			인정액
		삭감액	증 액	순삭감액	
계	416,000,000	0	0	0	416,000,000
일반회계	404,632,442	0	0	0	404,632,442
특별회계	11,367,558	0	0	0	11,367,558

라. 삭감조서 : 해당없음

마. 증액조서 : 해당없음

○ 세 출 : 416,000,000천원

가. 삭 감

1) 일반회계 : 4,309,000천원

2) 특별회계 : 100,000천원

나. 증 액

1) 일반회계 : 4,309,000천원

2) 특별회계 : 100,000천원

다. 회계별 수정내역

(단위:백만원)

회 계 별	예산요구액	심 사 결 과			
		세 출			인정액
		삭감액	증 액	순삭감액	
계	416,000,000	4,409,000	4,409,000		411,591,000
일반회계	404,632,442	4,309,000	4,309,000		400,323,442
특별회계	11,367,558	100,000	100,000		11,267,558

라. 삭감조서

1) 일반회계

(단위:천 원)

예산과목	사 업 명	요구액	삭감액	인정액
계	12개 사업	6,059,000	4,309,000	1,750,000
307-04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	600,000	310,000	290,000
401-01	가족센터 등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2,600,000	2,600,000	0
401-01	필암서원로 엘로우 장미거리 조성	100,000	100,000	0
401-01	관내 터널 경관개선계획 수립용역	55,000	55,000	0
401-01	청운지하차도 개설	2,000,000	700,000	1,300,000
401-01	장성경찰서-애플탑 간 중앙로 정비	300,000	200,000	100,000
401-01	구.전남제재소-보해양조간 보도정비	160,000	100,000	60,000
201-01	레시피 및 로컬푸드 홍보물 제작	2,000	2,000	0
206-01	로컬푸드 레시피 개발	2,000	2,000	0
206-01	로컬푸드 급식재료지원	20,000	20,000	0
401-01	사업소 내부 도로선형개량	200,000	200,000	0
401-01	조경유지관리사업	20,000	20,000	0

2) 특별회계

(단위:천원)

예산과목	사 업 명	요구액	삭감액	인정액
계	1개 사업	100,000	100,000	0
201-01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 도입	100,000	100,000	0

마. 증액조서

1) 일반회계

예산과목	사 업 명	요구액	삭감액	인정액
801-01	예비비	0	4,309,000	4,309,000

2) 특별회계

예산과목	사 업 명	요구액	삭감액	인정액
801-01	예비비	0	100,000	100,000

▪ 의결결과 : 수정가결

16. 2020년도 장성군 각종기금운용 계획안

▪ 제출일자 : 2019. 11. 18.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주요내용

○ 수 입 : 8,458,119천원

- 삭감액 : 없음

○ 지 출 : 8,458,119천원

- 삭감액 조서 : 해당 없음

○ 기금별 수정내역

(단위:천원)

기 금 별	운용요구액	심 사 결 과				인정액
		수 입 삭감액	지 출			
			삭감액	증 액	순삭감액	
계	8,458,119	0	0	0	0	8,458,119
재난관리기금	1,766,552	0	0	0	0	1,766,552
체육진흥기금	1,925,288	0	0	0	0	1,925,288
사회복지기금	3,424,969	0	0	0	0	3,424,969
폐기물주민지원	1,263,509	0	0	0	0	1,263,509
식품진흥기금	77,801	0	0	0	0	77,801

○ 증감액 : 해당없음

○ 예치금 : 6,621,018천원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7. 2020년도 예산안

▪ 제출일자 : 2019. 12. 4.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주요내용

○ 세 입 : 455,803,982천원

가. 삭 감 : 해당없음

나. 증 액 : 해당없음

다. 회계별 수정내역

(단위:천원)

회 계 별	예산요구액	심 사 결 과			
		세 입			인정액
		삭감액	증 액	순삭감액	
계	455,803,982	0	0	0	455,803,982
일반회계	443,370,754				443,370,754
특별회계	12,433,228				12,433,228

라. 삭감조서 : 해당없음

마. 증액조서 : 해당없음

○ 세 출 : 455,803,982천원

가. 삭 감

1) 일반회계 : 3,200,000천원

2) 특별회계 : 해당없음

나. 증 액

1) 일반회계 : 3,200,000천원

2) 특별회계 : 해당없음

다. 회계별 수정내역

(단위:백만원)

회 계 별	예산요구액	심 사 결 과			
		세 출			인정액
		삭감액	증 액	순삭감액	
계	455,803,982	3,200,000	3,200,000		455,803,982
일반회계	443,370,754	3,200,000	3,200,000		443,370,754
특별회계	12,433,228	0	0		12,433,228

라. 삭감조서

1) 일반회계

(단위:천원)

예산과목	사 업 명	요구액	삭감액	인정액
계	2개 사업	3,200,000	3,200,000	0
401-01	황룡강변 인공폭포 설치사업	2,000,000	2,000,000	0
401-01	장성제일교~황미르랜드 하천제방정비사업	1,200,000	1,200,000	0

2) 특별회계 : 해당없음

마. 증액조서

1) 일반회계

예산과목	사 업 명	요구액	삭감액	인정액
801-01	예비비	0	3,200,000	3,200,000

2) 특별회계 : 해당없음

■ 의결결과 : 수정가결